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요 약>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서 대도시로 유입되어 농어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를 한도로 기부금의 20만원까지는 전액공제하고 2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35%, 2,000만원 초과분은 40%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금전과 자산성 높은 품목 제외)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부금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주제어> 고향납세제도, 지방자치단체, 세액공제, 기부금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greatsan@daegu.ac.kr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적 기반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에 집중되고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비수도권과 농촌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고향 및 자신이 후원하는 지역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소득세나 개인주민세를 전액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 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고향으로서의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증정하여 지역의 홍보효과와 해당 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고향납세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도년의 고향납세액으로 2,844.1억 엔을 기부 받았다. 납세액에 따른 재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재육성, 어린이·육아, 건강·의료·복지, 지역·산업진흥 등의 목적에 활용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방재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증대되는 효과로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본 제도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¹⁾ 그러나 국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고향납세제도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향납세제도와 관련하여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 제시하였으며,

1) 우리나라에서의 고향세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처음 내놔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향토발전세’ 신설을 공약으로 검토하였지만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전라북도도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하였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서 ‘더 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방재정 악화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농민신문, 2017.6.16. 특별기고—강경희).

당선 이후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향납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의원 법안 발의 사항과 문제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고향사랑기부제”등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추후 본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합리적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하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고향납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현황과 공제액의 계산방법, 공제액의 신고방법, 답례품의 제공현황, 고향납세액의 용도와 활용분야 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제Ⅳ에서는 앞서 살펴 본 논의에 따라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공헌점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일본의 고향납세제도²⁾

1. 고향납세제도의 개념과 현황조사 결과

가. 고향납세제도의 개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로 아베 총리가 주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 자치단체에서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겨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도시의 자치단체는 많은 세수를 얻고 있지만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자치단체는 세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어도,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탄생한 것이 고향납세제도이다.

고향납세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의미는 시·도에 대한 “기부”이다.³⁾ 즉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시구정촌(市区町村)에 고향납세(기부)를 한 자는 본인의 급

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개념은 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2007)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3) 고향납세는 주소지에 납부하는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구조이지만, 기부금 세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부와 그에 따른 세금 경감을 조합한 것이다(일본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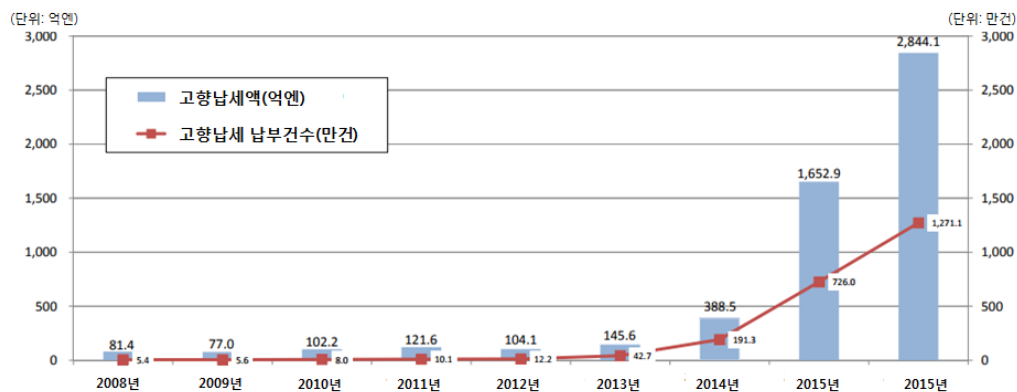
여소득과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고향납세(기부)한 금액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 및 개인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하는 제도이다(예 : 연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부양가족 없음)가 30,000엔의 고향납세를 하면 2,000엔을 제외한 28,000엔이 공제된다). 여기서 고향납세(기부)는 “태어나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자신의 의사로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신의 고향에 한정하지 않고, 타 자치단체에도 고향납세를 할 수 있다.

나.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표 1>은 일본의 도도부현(47단체)과 시구정촌(1,741단체)의 모든 자치단체(1,788단체)를 대상으로 고향납세액과 고향납세 납부건수의 실적상황(2016년은 결산예상 상황)을 일본의 자치세무국시정촌세과(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에서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 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납세액은 81.4억엔에서 104.1억엔으로, 납부건수는 5.4만 건에서 12.2만 건으로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의 납세액(납부 건수)은 2013년도 145.6억엔(42.7만 건)과 2014년 388.5억엔(191.3만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도에는 1,652.9억엔(726만 건)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납세액(납부 건수)이 약 4.25배(약 3.8배), 2016년도에는 2,844.1억엔(1,271.1만건)으로서 약 7.32배(약 6.44배)의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도 2015년도에 대비하여 납세액과 납부 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 고향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2014년도 이후부터의 고향납부액과 납부건수가 비약적으로 급증한 원인으로는 2015년부터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원스톱특례제도의 창설에 따른 개정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고향납세액과 고향납세 납부건수



〈표 1〉 고향납세액과 고향납세 납부건수 (계속)

(단위 : 천엔,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납세액	8,139,573	7,697,723	10,217,708	12,162,570	10,410,020	14,563,583	38,852,167	165,291,021 (28,674,022)	284,408,875 (50,123,497)
납부 건수	53,671	56,332	79,926	100,861	122,347	427,069	1,912,922	7,260,093 (1,476,697)	12,710,780 (2,566,587)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關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 전체 지방단체(도도부현 및 시구정촌)를 대상으로 한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의 조사결과이다.

* 납세액과 납부건수는 각 지방단체에서 「고향납세」라고 정리하고 것으로서 법인으로부터의 기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 관한 의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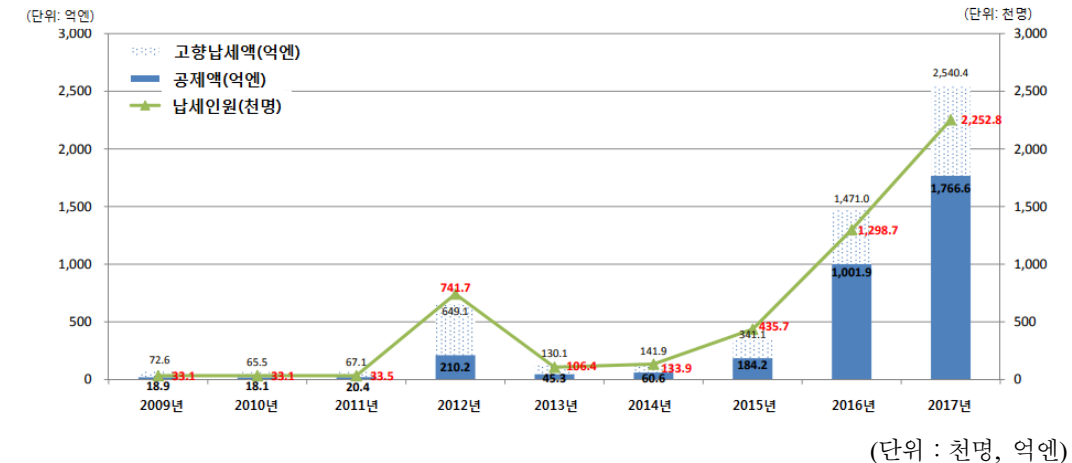
* 2015년도 및 2016년도 중 괄호안의 수치는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실적이다.

<표 2>는 2017년도 전체 도시(1,741단체)를 대상으로 고향납세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일본의 자치세무국시정촌세과(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에서 조사를 실시한 현황 자료(고향납세의 수입실적은 2017년 6월 1일 현재)이다. 위 고향납세액의 조사결과는 개인 주민세의 과세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지출된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또는 특별구(特別区)에 대한 기부금 중 신고 또는 신고특례의 적용에 의해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액이다.

신청자 수 및 고향납세액은 시읍면민세(市町村民税)의 계수이며, 공제액은 도부현민세(道府県民税)와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도도부현별(都道府県別)의 계수는 고향납세를 받은 지방단체에 관한 도도부현별(都道府県別)의 계수가 아니라 고향납세를 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단체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의미한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원스톱특례제도를 시행한 2015년을 기준으로 전(2009년~2014년)과 후(2015년~2017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고향납세에 따른 납부세액과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공제액도 개정 전 공제액 평균이 62.25억엔에서 개정 이후에는 984.23억엔으로 약 15.8배 상승하여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 본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이후의 공제액도 2015년(184.2억엔)대비 2016년(1,001.9억엔)의 공제액이 5.44배, 2017년도에는 9.6배로 급증하였다. 다만, 이러한 공제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세수입이 감소하는 기부자 주소지의 지방단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표 2〉 고향납세에 관한 공제액의 추이(전국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향납세액	72.6	65.5	67.1	649.1	130.1	141.9	341.1	1,471.0 (242.2)	2,540.4 (470.5)
공제액	18.9	18.1	20.4	210.2	45.3	60.6	184.2	1,001.9 (229.6)	1,766.6 (449.3)
적용자 수	33.1	33.1	33.5	741.7	106.4	133.9	435.7	1,298.7 (418.8)	2,252.8 (771.8)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平成29年7月28日)

* 각 연도의 계수는 전년도(예 : 2017년에 대해서는 201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고향납세와 공제액을 적용한 것임.

*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향납세공제 및 적용자 수는 “각 연도의 시정촌 과세상황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인원)이다.

* 2016년 및 2017년의 괄호안의 수치는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의 적용실적(2017년 6월1일 현재)

2. 고향납세액의 공제액 계산

가. 고향납세 공제액의 계산방법

고향납세(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금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된다. 고향납세에 따른 공제액의 계산방법은 <표 3>의 [패널 A]와 같으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공제대상 금액은 “(고향납세금액-2,000엔)×소득세율”로 결정된다. 여기서 고향납세금액은 총소득금액의 40%까지 고향납세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0~

45%의 세율에 부흥특별소득세(2.1%)를 가산한 비율이다.

다음으로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공제대상금액은 「기본분」과 「특례분」이 다음과 같이 각각 결정된다. 둘째, 개인주민세(기본분)는 “(고향납세금액-2,000엔)×10%”로 계산되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고향납세금액은 총소득금액의 30%가 상한이다.

셋째, 개인주민세(특례분)는 개인주민세 특례분이 주민세 소득할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향납세금액-2,000엔)×(100%-10%(기본분)-소득세율)”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할액×20%”로 계산한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 공제액, 개인주민세(기본분), 개인주민세(특례분)의 공제액을 합해도 (고향납세금액-2,000엔)의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어서 실질 부담액은 2,000엔을 초과할 수 있다.

〈표 3〉 고향납세 공제액의 계산구조

[패널 A] 고향납세 공제액의 계산방식			
← 공제 외 ← 공 제 액 →			
적용 하한액 2,000엔	소득세 공제액 (고향납세금액-2,000엔) × 소득세율	주민세 공제(기본 분) (고향납세금액-2,000엔) × 주민세율(10%)	주민세 공제(특례 분) 소득할액의 20% 한도

[패널 B] 고향납세 공제액의 계산사례			
← 고향납세금액 30,000엔 →			
적용 하한액 2,000엔	[소득세] 소득공제에 의한 경감*** (30,000엔-2,000엔) × 20%** =5,600엔	[개인 주민세] 세액공제(기본 분)*** (30,000엔-2,000엔) × 10% =2,800엔	[개인 주민세] 세액공제(특례 분) (30,000엔-2,000엔) × (100%-10%-20%**) =19,600엔
<----- 소득세와 합한 공제액 28,000엔 ----->			

* 출처 : 總務省(<http://www.soumu.go.jp>)의 고향납세제도의 개요를 참조.

주1) 소득세의 한계세율이며, 연봉에 따라 0~45%사이에서 변동한다. 또한 2014년(平成26年)부터 2038년(平成50年)의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稅) 2.1%를 가산한 비율이다.

주2) 대상이 되는 기부금액의 소득세는 총소득금액 등의 40%가 한도이며, 개인주민세(기본 분)는 총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다.

주3) 개인주민세(특례분)의 공제액 한도는 개인주민세 소득할액의 2할이다.

<표 3>의 [패널 B]는 앞서 살펴본 [패널 A]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연간 총소득금액 700만엔의 급여소득자(부양가족 없음,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20%로 가정)가 지방자치단체에 30,000엔의 고

향납세를 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공제액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경우 고향납세(기부금) 30,000엔 중에서 2,000엔을 제외한 소득세공제로 5,600엔과 개인주민세(기본분)공제 2,800엔, 개인주민세(특례분)공제 19,600엔으로 총 28,000엔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 기부금액은 2,000엔으로 계산된다.

나. 고향납세금액(연간 상한액)의 기준(2,000엔 제외)

〈표 4〉 전액 공제되는 고향납세금액(연간 상한액)의 기준(2,000엔 제외)

(단위 : 엔)

		고향납세자의 가족구성					
		독신 또는 맞벌이	부부/맞벌이 +자녀1 (고교생)	맞벌이 +자녀1 (대학생)	부부 +자녀1 (고교생)	맞벌이 +자녀2 (대학생+ 고교생)	부부 +자녀2 (대학생+ 고교생)
고향 납 세 자 본 인 의 급 여 소 득	300만엔	28,000	19,000	15,000	11,000	7,000	—
	325만엔	31,000	23,000	18,000	14,000	10,000	3,000
	350만엔	34,000	26,000	22,000	18,000	13,000	5,000
	375만엔	38,000	29,000	25,000	21,000	17,000	8,000
	400만엔	42,000	33,000	29,000	25,000	21,000	12,000
	425만엔	45,000	37,000	33,000	29,000	24,000	16,000
	450만엔	51,000	41,000	37,000	33,000	28,000	20,000
	475만엔	56,000	45,000	40,000	36,000	32,000	24,000
	500만엔	61,000	49,000	44,000	40,000	36,000	28,000
	525만엔	65,000	56,000	49,000	44,000	40,000	31,000
	550만엔	69,000	60,000	57,000	48,000	44,000	35,000
	575만엔	73,000	64,000	61,000	56,000	48,000	39,000
	600만엔	77,000	69,000	66,000	60,000	57,000	43,000
	625만엔	81,000	73,000	70,000	64,000	61,000	48,000
	650만엔	97,000	77,000	74,000	68,000	65,000	53,000
	675만엔	102,000	81,000	78,000	73,000	70,000	62,000
	700만엔	108,000	88,000	83,000	78,000	75,000	66,000
	725만엔	113,000	104,000	88,000	82,000	79,000	71,000
	750만엔	118,000	109,000	106,000	87,000	84,000	76,000
	775만엔	124,000	114,000	111,000	105,000	89,000	80,000
	800만엔	129,000	120,000	116,000	110,000	107,000	85,000

〈표 4〉 전액 공제되는 고향납세금액(연간 상한액)의 기준(2,000엔 제외) (계속)

		고향납세자의 가족구성					
		독신 또는 맞벌이	부부/맞벌이 + 자녀1 (고교생)	맞벌이 + 자녀1 (대학생)	부부 + 자녀1 (고교생)	맞벌이 + 자녀2 (대학생 + 고교생)	부부 + 자녀2 (대학생 + 고교생)
고 향 납 세 자 본 인 의 급 여 소 득	825만엔	135,000	125,000	122,000	116,000	112,000	90,000
	850만엔	140,000	131,000	127,000	121,000	118,000	108,000
	875만엔	145,000	136,000	132,000	126,000	123,000	113,000
	900만엔	151,000	141,000	138,000	132,000	128,000	119,000
	925만엔	157,000	148,000	144,000	138,000	135,000	125,000
	950만엔	163,000	154,000	150,000	144,000	141,000	131,000
	975만엔	170,000	160,000	157,000	151,000	147,000	138,000
	1,000만엔	176,000	166,000	163,000	157,000	153,000	144,000
	1,100만엔	213,000	194,000	191,000	185,000	181,000	172,000
	1,200만엔	242,000	232,000	229,000	222,000	219,000	200,000
	1,300만엔	271,000	261,000	258,000	252,000	248,000	238,000
	1,400만엔	355,000	343,000	339,000	331,000	277,000	267,000
	1,500만엔	389,000	377,000	373,000	366,000	361,000	350,000
	1,600만엔	424,000	412,000	408,000	400,000	396,000	384,000
	1,700만엔	458,000	446,000	442,000	435,000	430,000	419,000
	1,800만엔	493,000	481,000	477,000	469,000	465,000	453,000
	1,900만엔	528,000	516,000	512,000	505,000	500,000	489,000
	2,000만엔	564,000	552,000	548,000	540,000	536,000	524,000
	2,100만엔	599,000	587,000	583,000	576,000	571,000	560,000
	2,200만엔	635,000	623,000	619,000	611,000	607,000	595,000
	2,300만엔	767,000	754,000	749,000	741,000	642,000	631,000
	2,400만엔	808,000	795,000	790,000	781,000	776,000	763,000
	2,500만엔	849,000	835,000	830,000	822,000	817,000	804,000

* 출처 : 總務省(<http://www.soumu.go.jp>)의 고향납세제도의 개요를 참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향납세액의 공제액 계산방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더라도 고향납세자의 연간 총 급여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서 전액 공제되는 고향납세금액의 연간 상한액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표 3>의 기준에 따른 전액 공제되는

고향납세금액의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공제되지 않아 자기 부담액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표 4>는 고향납세를 한 자의 본인의 총 급여소득과 그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고향납세금액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 표이며, 고향납세금액의 연간 상한액은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 및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액을 의미한다.⁴⁾

여기서 “맞벌이”는 고향납세를 한 자인 본인이 배우자특별공제의 적용⁵⁾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부부”는 고향납세를 한 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고향납세를 한 자 본인이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이다. “고교생”은 16세부터 18세의 부양친족이며, “대학생”은 19세부터 22세의 특정부양친족을 의미하고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공제액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夫婦子 1명(초등학생)”은 “부부”와 같은 금액이며, 또한 “夫婦子 2명(고교생과 중학생)”은 “夫婦子 1명(고교생)”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표 4>에 따른 공제금액과 자기 부담의 증가분을 살펴보면, 급여수입이 300만엔이며, 독신인 납세자(주택용자 공제 등을 받지 않은 자)가 28,000엔 이하의 고향납세를 하면 본인 부담액은 2,000엔으로 고향납세 금액에서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이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28,000엔 이상의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만큼 자기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3. 고향납세 공제액의 신고방법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공제는 <그림 1>과 같이 확정신고를 한 경우와 원스톱 특례제도(ふるさと納税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정신고에 따른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향납세를 한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주소 등의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부를 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기부금 증명서·영수증이나 전용입금용지납입영수증이 필요하다.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액의 계산산식”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의 공제액이 각각 결정되며, 소득세 분은 그 해의 소득세에서 공제(환급)된다. 그리고 주민세 분은 다음 연도의 주민세액에서 공제(주민세의 감액)된다.

확정신고서의 제출은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등의 관할세무서에 우편(또는 지참)을 이용한 방법과 국세청의 e-Tax(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등에 의해 소득세가 0엔이

4) 위의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및 개인 주민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며,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고향납세 다음연도 1월 1일 현재)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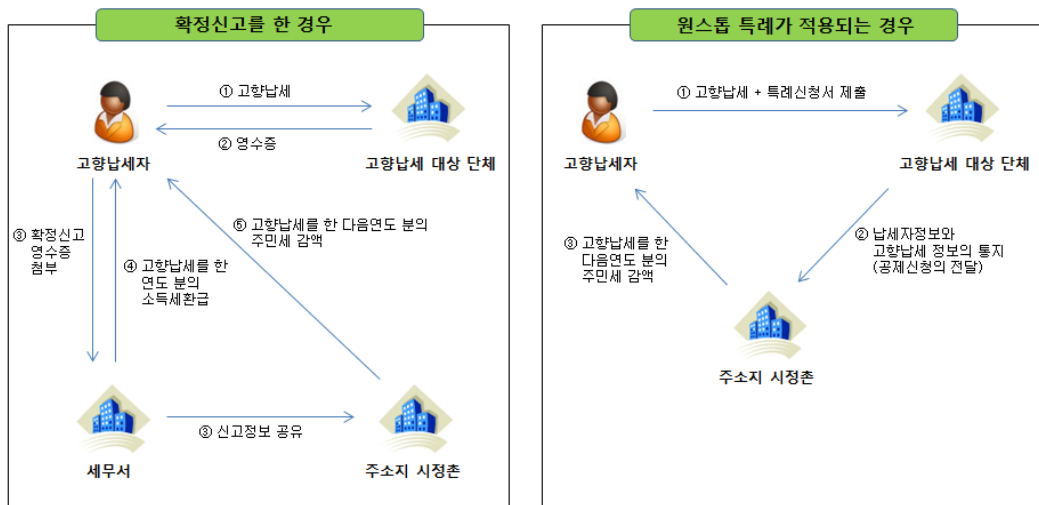
5) 배우자의 급여수입이 141만엔 이상의 경우에는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 주민세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자는 주민세에 관한 신고서를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구청촌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소득세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 소득자 등⁶⁾에 대해서는 확정신고가 고향납세를 주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확정신고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 등이 고향납세를 할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향납세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ふるさと納税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가 2015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의 수가 5개 단체 이내(같은 지방단체에 여러 차례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기부처의 지방단체는 1개로 한다⁷⁾)로 적은 경우에는 미리 고향납세를 할 때 고향납세 대상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기부금 공제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고 원스톱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고 고향납세를 한 다음 해 6월 이후에 주민세에서 공제(주민세의 감액)된다. 그러나 원스톱 특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5개 단체 이상에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와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림 1〉 고향납세 공제액의 신고방법



출처 : 總務省(<http://www.soumu.go.jp>)의 고향납세제도의 개요를 참조.

6)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라도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부칙 제7조 제8항).

7)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제9항.

4. 고향납세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⁸⁾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고향이나 지방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육아와 교육, 마을 만들기 등에 활용되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재해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활용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고향납세 제도는 세제상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각 지방단체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방단체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단체에서는 고향납세의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는 등의 지적이 있어서 총무대신통지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답례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가. 답례품의 가격 등의 표시

“답례품(특산품)의 가격”과 “답례품(특산품)의 가격비율(기부금액의 몇 %상당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및 홍보매체와 고향납세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매체 등에 표시하여 기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답례품의 제한

고향납세는 경제적인 이익의 무상공여인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있어 일반 기부금공제 이외에 특례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답례품(특산품)에 대해서는 재판매 방지책 정도, 지역 경제효과 등과 관계없이 고향납세의 취지에 반하므로 제한하고 있다.

- ① 금전 유사성이 높은 것(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포인트·마일리지, 통신요금 등)
- ② 자산성이 높은 것(전기·전자기기, 가구, 귀금속, 보석,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동차 등)
- ③ 고액의 답례품 또는 기부금액에 대한 답례품 조달가격의 비율(이하 “답례비율”이라 한다)이 높은 것

여기서 ①의 경우에는 사용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고 고향납세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자 등이 부여하는 포인트 등을 포함한다. ③의 답례비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30%이하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향납세의 취지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단체의 주민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다.

8) 總務大臣通知(総税市 第28号), “ふるさと納税に係る返礼品の送付等について”, 平成29年4月1日.

다. 답례품의 임시소득

지방단체가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는 기부자의 임시소득에 해당한다. 이것은 고향납세(기부) 소득(특산품)을 얻기 위하여 지출로 간주되지 않아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며, 임시소득은 연간 50만엔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라. 답례품 제공현황

일본의 도도부현(47단체)과 시구정촌(1,741단체)의 모든 자치단체(1,788단체)를 대상으로 고향납세에 따른 각 지방단체의 답례품현황은 <표 5>와 같으며, 이는 일본의 자치세무국시정촌세과(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단체는 2016년에 90.5%, 2017년에는 94.2%로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단체에서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표 5〉 각 지방단체의 답례품 제공여부

(단위 : 단체(%))

답례품 제공여부	2016년	2017년
답례품을 제공하는 단체	1,618(90.5%)	1,684(94.2%)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는 단체	168(9.4%)	104(5.8%)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2016년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은 168개의 지방단체 중 95(5.3%)개의 단체는 향후 답례품 제공을 검토 중이며, 73개(4.1%)의 단체는 현재 답례품의 송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7년의 경우에는 답례품을 송부하지 않은 104개의 지방단체 중 43(2.4%)개의 단체는 향후 답례품 발송을 검토 중이며, 61개(3.4%)의 단체는 현재 답례품의 송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추후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단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답례품을 송부하지 않은 지방단체 중에서 감사패 증정 및 홍보잡지에 이름게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단체는 81개의 단체(4.5%)이다.

답례품 제공품목을 <표 6>을 통하여 살펴보면 지역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지방단체가 1,379개(77.1%), 축산물 892개(49.9%), 전통 공예품 701개(39.2%), 수산물 649개(36.3%)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감사장 및 홍보지에 게재,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권, 현지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초대권 등을 제공하여 품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답례품의 제공품목 현황

답례품 제공품목	지방단체 수(%)
지역의 농산물(가공품 포함)	1,379(77.1%)
지역의 쌀(가공품 포함)	1,061(59.3%)
지역의 축산물(가공품 포함)	892(49.9%)
지역의 전통 공예품 등	701(39.2%)
지역의 수산물(가공품 포함)	649(36.3%)
감사장, 홍보지	603(33.7%)
지역의 공공시설 이용권 등	456(25.5%)
현지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초대(수확체험 1일 ○○등)	267(14.9%)
피해지역 등 다른 지역을 응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특산품	37(2.1%)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2017년의 고향납세의 총수입액에 대한 답례품 조달에 따른 비용의 비율은 38.4%(=109,081백만엔/284,409백만엔)로서 2016년의 비율인 38.3%(=63,262백만엔/165,291백만엔)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무대신통지문(總務大臣通知(總稅市 第28号))에서 제한한 답례비율인 30%를 초과하여 추후 답례품 조달비용의 축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2017년 고향납세 총수입액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은 52.2%(148,513백만엔/284,409백만엔)이고 2016년은 48%(79,258백만엔/165,291백만엔)로서 전년도 대비 4.2%의 총비용이 상승하였다.

〈표 7〉 답례품 제공에 따른 비용현황

(단위 : 백만엔)

구 분	2016년	2017년
답례품 조달에 따른 비용	63,262	109,081
답례품의 제공에 관련한 비용	4,262	15,021
홍보에 관한 비용	1,412	3,114
결재 등에 관한 비용	1,810	5,159
기타 사무에 관한 비용	8,511	16,138
합 계	79,258	148,513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 답례품 조달에 따른 비용에는 홍보 등을 일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 전체를 포함하여 답변하는 단체도 있다.

5. 고향납세 공제액(개인주민세 특례공제액)의 2배 확대

고향납세제도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본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이러한 당초 취지에 부합한 긍정적인 목적이 달성된 것은 아니다.

본 제도의 전환점을 맞이한 계기는 첫째, 2015년도 세제개정에 의하여 개인주민세의 특례공제액의 상한액이 개인주민세 소득할액의 1할에서 2할로의 확대되었다. 즉 기부금 중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되는 한도액이 약 2배로 확대된 것이다. 둘째, 기부금공제의 원스톱특례제도가 도입된 시기부터이다. 이하에서는 <표 8>을 통하여 세제개정 이전(2014년 이전)과 2015년의 고향납세 공제액이 2배로 확대된 개정 이후를 비교하여 전·후의 공제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8>의 연수입이 700만엔의 급여소득자(부부, 자녀 2명)가 50,000엔의 기부를 할 경우 세제개정 전·후의 자기부담액을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기부금(50,000엔)에서 2,000엔을 제외하고 소득세(4,800엔), 개인주민세 기본분(4,800엔), 개인주민세 특례분 상한액(29,350엔)을 합한 총 38,950엔을 공제받아 자기부담액이 11,050엔이다. 개정 후에는 개인주민세 특례분 상한이 2배로 확대되어 소득세(4,800엔), 개인주민세 기본분(4,800엔), 개인주민세 특례분 (38,400엔)의 합계인 총 48,000엔을 공제받아 자기부담액이 2,000엔으로 이를 제외한 전액을 공제받도록 세제를 개정하여 9,050엔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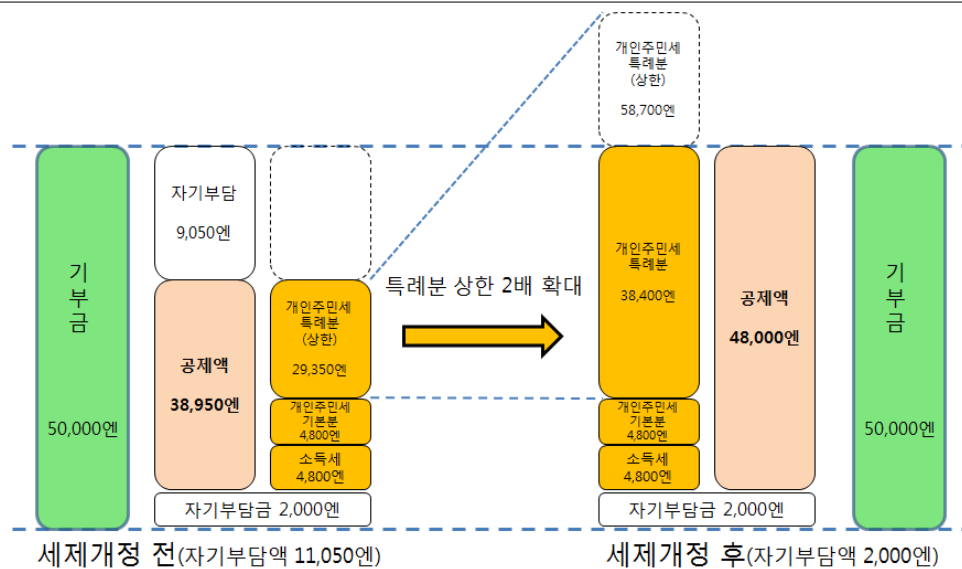
<표 8> 세제개정 전·후의 자기부담액 비교

<가정> 연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가 50,000엔의 기부를 했을 경우	
• 가족구성 : 부부+자녀 2명 • 고향납세를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음, 자녀는 대학생 1명, 고교생 1명 • 소득세 세율 : 10% • 개인 주민세의 소득할액 : 293,500엔	
1. 세제개정 전(前)의 자기부담액(11,050엔)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50,000엔) - 2,000엔 = 48,000엔	
② 소득세 공제액 : ① × 10% = 4,800엔	
A. 개인주민세(기본분) : ① × 10% = 4,800엔	
B. 개인주민세(특례분) : ① × (90% - 10%(소득세의 세율)) = 38,400엔	
C. B의 상한액 : 293,500엔(개인 주민세 소득할액) × 10% = 29,350엔	
③ 개인 주민세 공제액(A+B(다만, B의 값이 C를 넘는 경우는 A+C)) : 34,150엔	
④ 공제 합계액(②+③) : 38,950엔	
⑤ 자기 부담액 기부금액(50,000엔) - ④ : 11,050엔	

〈표 8〉 세제개정 전·후의 자기부담액 비교 (계속)

2. 세제개정 후(後)의 자기부담액(2,000엔)

-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50,000엔) - 2,000엔 = 48,000엔
- ② 소득세 공제액 : ① × 10% = 4,800엔
 - A. 개인주민세(기본분) : ① × 10% = 4,800엔
 - B. 개인주민세(특례분) : ① × (90% - 10%(소득세의 세율)) = 38,400엔
 - C. B의 상한액 : 293,500엔(개인 주민세 소득할액) × 20% = 58,700엔
- ③ 개인 주민세 공제액(A+B(다만, B의 값이 C를 넘는 경우는 A+C)) : 43,200엔
- ④ 공제 합계액(②+③) : 48,000엔
- ⑤ 자기 부담액 기부금액(50,000엔) - ④ : 2,000엔



* 출처 : 總務省(<http://www.soumu.go.jp>)에서 참조하여 자료 재작성

이러한 공제대상금액의 확대에 의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표 1>과 <표 2>와 같이 2015년 이후부터 고향납세액, 고향납세 납부 건 수, 납세인원이 비약적으로 급증하여 고향납세제도가 하나의 기부금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여 추후 지방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자치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공헌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6. 고향납세액의 용도 및 효과

가. 고향납세액의 용도와 활용분야

<표 9>와 같이 2017년 총무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처는 전체 지방단체 중에서 1,692개(92.2%)의 단체가 고향납세를 한 자(기부자)가 직접 기부용도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단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각 지방단체는 홈페이지에 기부의 용도와 사업내용 및 추진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표 9〉 기부금 용도의 선택여부

	2015년 조사	2016년 조사	2017년 조사
선택가능	1,598단체(89.4%)	1,623단체(90.8%)	1,692단체(92.2%)
선택불가능	176단체(10.0%)	163단체(9.1%)	134단체(7.5%)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8年6月1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7年10月23日.

위의 <표 9>의 설문조사에서 기부금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지방단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기부금 용도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단체는 2015년도 72.2%, 2016년도 77.2%, 2017년도 88.8%가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도 2017년 11.2%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0〉 기부금 용도의 선택범위

	2015년 조사	2016년 조사	2017년 조사
분야 선택가능	1,291단체(72.2%)	1,381단체(77.2%)	1,587단체(88.8%)
분야 및 구체적인 사업 선택가능	213단체(11.9%)	180단체(10.1%)	—
구체적인 사업 선택가능	91단체(5.1%)	62단체(3.4%)	200단체(11.2%)
계	1,595단체(89.2%)	1,623단체(90.7%)	1,787단체(100%)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8年6月1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7年10月23日.

고향납세액의 재원을 바탕으로 활용된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먼저 2015년의 경우에는 주로 「교육·인재육성」, 「마을 만들기·시민활동」, 「건강·의료복지」의 순위에 따라 활용되었다. 2016년도에는 「교육·인재육성」, 「건강·의료복지」, 「어린이·육아」의 분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조사에서는 「교육·인재육성」, 「어린이·육아」, 「건강·의료복지」로 활용되었다고 응답한 단체가 많았다.

특히 2015년은 고향납세의 재원으로 「마을 만들기·시민활동」으로 활용한 단체가 많았으나 2016년 및 2017년에는 급감하였고, 이를 「어린이·육아」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교류·정주촉진」과 「재해지원·부흥」으로의 지출도 확대되고 있어 고향납세제도가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고향납세 재원의 활용사업

(단위 : 단체 수)

	2015년 조사	2016년 조사	2017년 조사
교육·인재육성	597	568	660
어린이·육아	154	438	605
건강·의료·복지	377	486	538
지역·산업진흥	176	336	395
환경	242	340	357
관광·교류·정주촉진	123	265	329
마을 만들기·시민활동	443	267	260
스포츠·문화진흥	269	247	251
안심·안전·방재	127	142	164
재해지원·부흥	39	33	57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8年6月1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7年10月23日.

나. 고향납세액의 재원으로 활용한 주요 사업의 효과

2017년 총무성에서 고향납세의 수용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용단체에서 생각하는 고향납세의 주요한 효과로 「육아지원 등 복지시책의 충실」 및 「교육사업의 충실」이라고 답변한 지방단체가 많았다. 사업의 효과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① 육아지원 등 복지시책의 충실(404개 단체) : 지역 육아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실이

9)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 나 놀이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더 많은 육아가정의 방문을 촉진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들 또는 아이들 간의 교류가 증대되었다.
- ② 교육사업의 충실(376개 단체) : 초·중학교에 테블릿PC와 전자칠판 등을 배치함으로써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활동을 추진하였다.
- ③ 지역산업의 진흥(216개 단체) : 산업지원보조금을 신설하여 창업의 지원과 동시에 판로확대를 지원하였다.
- ④ 지역의 이미지 제고(210개 단체) : 베이비 박스(육아용품 바구니)를 증정하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육아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시티프로모션의 시초가 되었다.
- ⑤ 이주·교류인구의 증가(185개 단체) : 신규 귀농자의 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귀농예정자들이 이주하였다.
- ⑥ 재해복구·부흥(44개 단체) : 관동·동북의 호우로 인한 수해 이재민들을 방문 및 상담하여 피해자들의 생활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고향납세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표 12>는 기부자들에게 고향납세와 관련하여 지방단체에서 수입액의 실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나타낸 자료이다. 고향납세의 수입액 실적과 활용상황의 자료를 모두 기부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지방단체가 2016년 955개 단체에서 2017년 1,040개 단체로 약 4.8%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향납세의 수입실적을 기부자들에게 공개하는 단체는 83.4%이며, 모두 비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5%이다.

〈표 12〉 기부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단위 : 단체(%))

공개 및 비공개 내용	2016년	2017년
수입액 실적 및 활용 상황(사업내용 등)을 모두 공개	955(53.4%)	1,040(58.2%)
수입액 실적은 공개, 활용 상황(사업내용 등)은 비공개	462(25.8%)	450(25.2%)
수입액 실적 비공개, 활용 상황(사업내용 등)은 공개	30(1.7%)	30(1.7%)
수입액 실적 및 활용 상황(사업내용 등)을 모두 비공개	332(18.6%)	268(15.0%)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7. 고향납세액이 증가한 원인

<표 13>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7월 4일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에서 전국 지방단체(총 1,788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설문조사에서

고향납세의 수입액과 수입 건수가 증가한 주된 이유로 답례품의 충실, 고향납세제도의 보급과 정착, 수납환경의 개선 및 홍보의 역할이 주된 요인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2015년도의 세제개정 사항인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의 도입은 본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용도, 사업내용의 충실」 및 「지진재해에 대한 지원」이라고 회답한 단체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 13〉 고향납부액의 증가원인

(단위 : 단체 수(%))

고향납세액이 증가한 이유	2016년	2017년
답례품의 충실	1,017(56.9%)	1,021(57.1%)
고향납세의 보급과 정착	999(55.9%)	1,020(57.0%)
수납환경 개선(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의 접수 등)	766(42.8%)	747(41.8%)
HP 등 홍보의 충실	588(32.9%)	580(32.4%)
2015년도의 제도확대(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의 도입)	791(44.2%)	538(30.1%)
용도 및 사업내용의 충실	122(6.8%)	169(9.5%)
지진·재해에 대한 지원	42(2.3%)	90(5.0%)

* 출처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關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9年7月4日.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關する現況調査結果”, 平成28年6月14日.

Ⅲ. 우리나라의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현재 고향납세제도와 관련하여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당선 이후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모두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라북도의회(양성빈 의원 외 11인)에서 제안하였다. 이하에서는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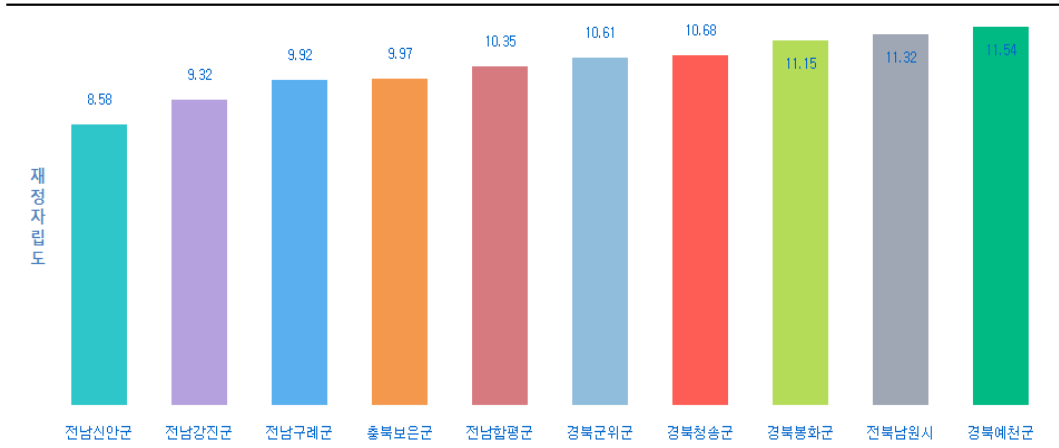
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표 14〉 재정자립 및 재정자주도

(단위 : %)

[패널 A]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서울	84.30	85.37	84.73	85.84	85.00	86.17
부산	56.85	70.96	60.09	71.67	60.13	70.07
대구	53.07	71.95	57.10	73.50	56.64	72.65
인천	64.45	73.73	66.98	77.32	65.41	75.92
광주	49.27	67.09	51.55	69.90	49.23	68.84
대전	54.86	71.69	54.99	71.96	57.09	74.32
울산	71.96	79.55	72.25	80.54	69.90	78.45
세종	54.77	78.02	58.97	75.99	70.48	80.01
경기	66.59	75.86	67.42	76.86	70.07	78.33
강원	25.92	69.10	27.15	68.8	29.07	73.00
충북	34.79	72.24	35.21	72.15	38.14	73.34
충남	35.25	70.32	38.69	71.80	39.29	72.21
전북	27.57	66.54	29.66	67.67	28.60	68.12
전남	22.83	65.50	23.76	65.56	26.23	67.16
경북	30.01	71.13	33.31	70.73	32.66	70.51
경남	43.33	72.05	43.49	72.34	44.96	72.60
제주	36.41	69.50	38.19	70.05	39.56	71.81

[패널 B]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위Top10



- *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 : //lofin.mois.go.kr/](http://lofin.mois.go.kr/))
- * 산정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이며, 전국평균은 순계기준이고 자치단체는 총계기준이다.
- * 재정자립도(당초) 산정공식 : $(\text{자체수입} \div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 재정자주도(당초) 산정공식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div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세외수입 금액은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 등이 포함된 값임

<표 14>의 시도별 재정자립도인 [패널 A]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최상위인 서울(85%)과 최하위인 전남(23.23%)은 약 3.66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총 17개의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지자체는 9곳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0%이상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85%), 세종(70.48), 경기(70.07%), 울산(69.9%), 인천(65.41) 등의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의 순서이다. 그러나 80%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곳은 서울 한 곳 뿐이다. 반면에 전남(26.23%), 전북(28.6%), 강원(29.07)은 3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이 중요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도시(수도권)와 지방도시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패널 B]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Top10을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8.58%), 전남 강진(9.32%)에서 전북 남원(11.32%), 경북 예천(11.54%)까지 약 1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서 자생 능력이 없거나 존폐 위기에 봉착될 수 있으므로 추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증대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예상지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2015~2040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변화, 젊은 여성(가임) 인구변화, 고령 인구변화 등 3가지 인구 지표 추세에 근거하여 2040년 인구 소멸 예상지역을 도출하였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안정성이 높은 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9개를 4개 단위로 분류하여 상위 25%씩 인구감소 안정지역-검토지역-신중 검토지역-위험지역 순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시·군·구중에서 검토지역과 안정지역의 비율이 각각 33.3%와 31.8%로서 인구 감소 위험과 관련하여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30.7%로 가장 많았으며, 신중 검토지역도 25.2로서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우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표 15〉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시·군·구
인구감소 안정지역 (시=33곳, 군=13곳, 구=12곳)	울산 북구, 거제시, 광안구, 오산시, 화성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구미시, 아산시, 시흥시, 계룡시, 부산 강서구, 울산 동구, 김해시, 증평군, 기장군, 인천 서구, 당진시, 김포시, 군포시, 양구군, 인제군, 천안시, 안산시, 파주시, 평택시, 용인시, 해남군, 영암군, 이천시, 연수구, 청주시, 칠곡군, 제주시, 울주군, 양산시, 달성군, 장성군, 광주시, 서산시, 완주군, 남양주시, 대전 서구, 울산 남구, 의왕시, 양주시, 광명시, 고양시, 화천군, 대구 북구, 안성시, 남동군, 진천군, 달서구, 군산시, 전주시, 구리시
인구감소 위험지역 (시=4곳, 군=36곳, 구=17곳)	단양군, 순창군, 부여군, 부산 남구, 태안군, 공주시, 부산 진구, 동래구, 관악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북구, 영양군, 무주군, 상주시, 횡성군, 밀양시, 서울 중구, 고창군, 장흥군, 보은군, 강원 고성군, 금정구, 예천군, 산청군, 평창군, 종로구, 영동군, 신안군, 하동군, 경남 고성군, 영덕군, 서천군, 예산군, 수영구, 양양군, 대구 서구, 부안군, 대구 남구, 의성군, 울진군, 고흥군, 정선군, 의령군, 영월군, 남해군, 강화군, 부산 서구, 합천군, 영도구, 괴산군, 부산 동구, 청도군, 부산 중구, 군위군, 울릉군, 수원시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분석”, 2017.6(경향신문 재인용)

2. 문재인 정부의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계획, 국민의 정책 제안을 종합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가비전-5대 국정 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¹⁰⁾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 도입배경

수도권과 대도시로 사람과 돈, 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49.5%가 살고 있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되며,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지방재정을 살리는 데 힘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고향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서 자긍심과 함께 세

10) 여기서 고향이라 함은 출신지는 물론 마음의 고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액다수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2천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역악(전국 평균 이하)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 고향에서 받았던 혜택(교육, 복지 등)에 대해 보은하는 의미도 있어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소액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및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부금품법에 따라 납부한 ‘고향사랑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규정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마.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비교

<표 16>의 1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가칭)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3만 5천원(=10만원(10만원까지 세액공제) + 13만 5천원(10만원 초과 90만원×15%)) 이 소득세(국세)로 감면되며, 지방소득세(지방세)감면은 2.4만원(=23.5만원(소득세 감면 분)×10%(지방소득세의 소득세 10%))이다. 따라서 1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 분(23만 5천원)과 지방소득세 감면 분(2만 4천원)을 제외한 총 74만 1천원이 기부자 본인의 부담분이 된다.

〈표 16〉 100만원 기부하는 경우 부담비교의 산출내역

	고향사랑 기부(가칭)	비율	일본의 고향납세	비율
본인 부담	74만 1천원	74.1%	2만원	2%
국가 부담	23만 5천원	23.5%	19만 6천원	19.6%
지자체 부담	2만 4천원	2.4%	78만 4천원	78.4%
계	100만원	100%	100만원	100%

* 출처 :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보도자료(2017. 3. 30)

* 1엔=10원, 일본납세자 소득세 실효세율 20% 가정

* 일본은 소득금액의 일정한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의 40%, 개인주민세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의 30%, 개인주민세 특별공제는 소득금액의 20%)내에서 기부금공제를 허용하므로 실제로는 본인 부담이 이보다 증가할 수 있음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에는 소득세(국세)로 19만 6천원(=98만원(기부금 중 2만원 자기부담분 제외)×20%(소득세 실효세율 20% 적용))이 감면되며, 지방소득세(지방세)로 78만 4천원(=98만원(기부금 중 2만원 자기부담분 제외)×10%(기본공제))+98만원(기부금 중 2만원 자기부담분 제외)×70%(특별공제))이 감면된다. 따라서 고향납세로 1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2만원(2천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2만원(2천엔)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고향납세를 한 자의 본인의 급여소득과 그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고향납세금액(연간 상한)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7년 6월 22일 전라북도의회는 고향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애향심 고취 및 농촌지역과 농업

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부자에게 지역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제를 폐지하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심의 면제 등의 내용을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양성빈 의원 외 11인)하였다.

고향 농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은 농촌지역의 세입확충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효과,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지 고취, 기 기부자에게는 재 기부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심의 제의를 통해 개인 기부는 물론 오랫동안 지역에 정주한 상당수의 기업과 각종 단체의 기부를 유도하여 고향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6월 1일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7155)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의 재정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향(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을 떠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즉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안 소득세법 제11조의2 신설)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이를 통하여 세액이전을 받는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간·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2017년 5월 15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6881)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를 포함한다) 중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에 대한 투자를 위한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 8월 16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한 제안에서는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IV.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1. 국세(소득세) 위주로의 세액공제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고향납세액(고향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거주자 고향 기부금품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향기부금품 세액공제방법).

일본의 고향납세제도하에서는 전체 세액공제 대상금액 중에서 국세(소득세)로 20%, 지방세(개인주민세 기본분+특례분)가 80%의 비율로 고향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율이 80대 20로서 일본의 55대 45보다 국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일본의 경우처럼 단순히 지방세를 다시 배분하는 수준으로는 고향납세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고향납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확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국세 위주로의 세액공제 확대방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부수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도시와 지방) 간의 지방세 세액공제액의 배분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분쟁소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향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세액공제액의 확대

고향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행초기부터 지금과 같은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8년 도입 당시에 81.4억엔 수준이던 고향납세액은 2015년에는 1,653억엔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844억엔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고향납세액의 급증한 이유는 2015년도 세제개정으로 개인주민세의 특례공제액 상한액이 2배로 확대된 계기로 볼 수 있어 “세제혜택 확대=고향납세액 증가”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초기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기부자에게 기부에 따른 충분한 세제혜택(세액공제)이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15>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고향사랑 기부금(가칭)에 따르면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산식에 따르면 1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259,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741,000원으로 계산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980,000원이 세액공제되고 20,000원이 본인 부담액으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본인 부담액은 37배로 부담수준이 높으며, 세액공제액은 3.78배로 과소하게 공제되어 세제상의 혜택이 미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시행초기부터 2014년까지 고향납세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상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거주자가 기부하는 고향납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40%를 한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여기서 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고향납부액의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국세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도를 설정하였다.

<표 17> 고향납세액의 세액공제액(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20만원 이하	고향 기부금액 $\times$ 100%
2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0만원 + (고향 기부금액 - 20만원) $\times$ 3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94만원 + (고향 기부금액 - 1,000만원) $\times$ 35%
2,000만원 초과	644만원 + (고향 기부금액 - 2,000만원) $\times$ 40%

<표 17>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를 하면 기부금의 2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2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3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한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세의 세액공제액 $\times$ 10%(지방소득세의 소득세 10%)”금액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로 지방소득세 공제대상금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율이 일본은 55대 45, 우리나라는 80대 20으로서 일본은 지방세의 세수비율이 높아 국세(소득세)보다는 지방세(개인주민세)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의 경우이므로 지방세의 세액공제혜택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고향납세(기부금)

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액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동시에 적용되면 서로 간의 상쇄효과로 인하여 당초 고향납세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영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기부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였다.

<표 18>은 100만원을 고향납세(기부)하는 경우의 문제인 정부의 고향사랑 기부금(가칭)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및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입방안에 따른 부담액을 비교한 자기부담액의 산출내역이다.

고향납세(기부금)에 따른 자기부담액이 고향사랑 기부금(741,500원)과 본 연구의 도입방안(516,000원)은 일본의 고향납세(20,000원)와 비교해 볼 때, 자기부담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가칭)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공제금액이 258,000원(25.9%)으로서 공제비율이 낮다. 이는 실제 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가칭)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도입방안에 따른 자기부담액과 공제액은 각각 225,500원이 감소 또는 증가되어 고향납세(기부금)의 51.6%가 공제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입방안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급격한 세수감소 영향을 차단하는 한도액을 설정하고 국세를 중심으로 한 세액공제액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면 고향납제도의 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 자기부담액의 비교

<가정> 1,000,000원을 고향납세(기부)하는 경우 • 도입방안(2)의 경우 한도초과는 없다고 가정 • 1엔=10원, 일본납세자 소득세 실효세율 20% 가정 • 일본은 소득금액의 일정한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의 40%, 개인주민세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의 30%, 개인주민세 특별공제는 소득금액의 20%)내에서 기부금공제를 허용하므로 실제는 본인 부담이 이보다 증가할 수 있음	
1. 고향사랑 기부(가칭)의 자기부담액(741,500원)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 :	1,000,000원
② 소득세 공제액 :	①+②=235,000원
① 전액공제액 :	100,000
② 100,000원 초과분 공제액 :	900,000원×15%=135,000
③ 지방소득세 공제액 :	소득세 공제액(②)×10%(지방소득세율)=23,500원
④ 공제 합계액(②+③) :	258,500원
⑤ 자기 부담액 기부금액(①-④) :	741,500원

〈표 18〉 자기부담액의 비교 (계속)

2. 도입방안의 자기부담액(516,000원)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 : 1,000,000원	
② 소득세 공제액 : ①+㉑=440,000원	
㉑ 전액공제액 : 200,000	
㉒ 200,000원 초과분 공제액 : 800,000원 × 30%=240,000	
㉓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40%	
③ 지방소득세 공제액 : 소득세 공제액(②) × 10%(지방소득세율)=44,000원	
* 한도 : 지방소득세 × 40%	
④ 공제 합계액(②+③) : 484,000원	
⑤ 자기 부담액 기부금액(①-④) : 516,000원	
3. 일본의 고향납세 자기부담액(20,000원)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 : 1,000,000원 - 20,000원 = 980,000원	
② 소득세 공제액 : ① × 20% = 196,000원	
③ 개인 주민세 공제액(㉑+㉒) : 784,000원	
㉑ 개인주민세(기본분) : 980,000 × 10% = 98,000원	
㉒ 개인주민세(특례분) : ① × 70% = 686,000원	
④ 공제 합계액(②+③) : 980,000엔	
⑤ 자기 부담액 기부금액(1,000,000원 - ④) : 20,000원	

3.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단체는 보다 많은 기부자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다한 답례품의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답례품의 한도를 고향납세액의 30%로 제한하고, 답례품의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¹⁾

11)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제공은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납세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답례품을 내놓으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 예로 교토부 미야즈시(市)에서는 1000만엔(1억원) 이상 고향세를 납부할 경우 시가 750만엔(7500만원) 상당의 사유지(私有地)를 답례품으로 내놓았다. 또 미야자키현 미마타정(町)에서는 300만엔(3000만원) 이상 고향세를 내면 200만엔(2000만원) 상당의 특등급 와규(和牛) 한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당경쟁의 여파로 답례품이 고향세액의 80~90%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런 틈을 타 호객행위를 하는 답례품 쇼핑 물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향세를 자기부담금 2000엔(2만원)만 내고 고가의 답례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기도 했다. 심지어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여건을 갖춘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의 고향세 유치 양극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향납세(기부)에 따른 답례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향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답례품을 「소득세법」 상의 기타소득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답례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금액(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단, 답례품의 지급금액(시가)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또한 답례품을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과세물품인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지만,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답례품의 지급을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답례품(특산품)의 가격과 답례품의 가격비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30%이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향납세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답례품은 금전(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 포인트 · 마일리지 · 통신요금 등)과 자산(전기 · 전자기기, 가구, 귀금속, 보석,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성이 높은 품목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4. 기부금품 수령단체의 확대

문재인 정부의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전국 평균 이하)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대표발의에서도 서울 · 경기 · 인천을 제외하거나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 받은 기부금품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교육 · 인재육성, 어린이 · 육아, 건강 · 의료 · 복지, 관광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지원과 재해복구, 방재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발생되며, 재해복구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부금품 수령단체를 한정한다면 또 다른 불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 수령단체를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총무성은 올 4월1일 지자체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답례품 한도가 고향세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문서(총세시책 28호)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전달했다(‘고향세’로 활력찾는 일본 농촌을 가다<하>, 농민신문, 2017.6.9.).

5. 기부금 활용의 용도공개 및 지정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고향납부제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단순히 재정자립도 개선과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명목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부금의 불명확한 모금과 집행으로 인하여 당초 고향납세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입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금 용도와 기부금으로 활용된 사업 분야의 결과를 개별 기부자 및 기탁자치단체의 공보(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10%대의 낮은 재정자립도 보여 자생능력이 없거나 존폐위기에 봉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증대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부율이 80대 20으로서 일본의 55대 45보다 국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일본의 경우처럼 단순히 지방세를 다시 배분하는 수준으로는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고향납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확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본 국세 위주로의 세액공제 확대방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부수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도시와 지방) 간의 지방세 세액공제액의 배분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분쟁소지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거주자가 기부하는 고향납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를 한도로 기부금의 20만원까지는 전액공제하고, 2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0%, 1,000

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3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세의 세액공제액 $\times 10\%$ (지방소득세의 소득세 10%)”금액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고향납세(기부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답례품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답례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금액(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주민세 별도)를 적용한다(단, 답례품의 지급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제외). 또한 답례품(특산품)의 가격과 답례품의 가격비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30%이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답례품은 금전과 자산성이 높은 품목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넷째, 고향납세액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교육·인재육성, 어린이·육아, 건강·의료·복지, 관광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불가학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지원과 재해복구비용의 부담이 발생될 수 있고, 기부금품 수령단체를 한정한다면 또 다른 불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 수령단체를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금 용도와 기부금으로 활용된 사업 분야의 결과를 개별 기부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향납세제도는 조세원칙과 지방자치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답례품 제공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재정악화, 대도시(수도권)와 지방도시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예상되는 쟁점 사항과 그에 따른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조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재는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이전 단계로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2017. “지방재정확충과 재정불균형 완화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보도자료.
- 안호영, 20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04, 대한민국 국회.
- 양성빈, 2017.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 양성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70, 전라북도의회.
- 황주홍, 2016.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49, 대한민국 국회.
- 홍의락, 20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155, 대한민국 국회.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2015.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について”.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2017.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 ふるさと納税研究會. 2007. “ふるさと納税研究會報告書” ふるさと納税研究會.
- <http://lofin.mois.go.kr/>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02244005&code=620100
-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SPC/245998/view>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76631&subMenu=dsearch&key=%C1%B6%BC%BC
- <http://www.soumu.go.jp>

Research Focused on Application for Tax Levied for Support of Hometown*

Byung – San Lee**

〈Abstract〉

Recently, Korea is suffering from economic crisis occurring in suburbs as people capable of employment living in suburbs has moved to large city. Due to this depression in local economy, for certain district, they are likely to face financial bankruptcy as they are not capable of handling fees payable for employment, welfare as well as legal and obligatory expenses from deficiency in tax income including local tax income.

Application for tax levied for support of hometown is desperately needed due to abovementioned reasons and law amendment supporting this has been revised in parliament house. Recently, in order to grant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n local finance, ‘Law for supporting hometown’ (Tentative name) has been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financial plan for five years to solv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each financial body and deficiency in local finance through improving tax structure and expansion in involvement of local people on financial budget.

Therefore, in this research, followings are proposed if law for supporting hometown is to be introduced. Firstly, contribution made for hometown shall be subjected for tax deduction in national tax(Income tax). Secondly, tax deduction for income tax shall be taxed 40% of taxable income in maximum capacity, to 200,000 KRW, contributed amount shall be subjected for tax deduction, 30% of contribution amount over 200,000 KRW to 10,000,000 KRW shall be deductible, 35% for over 10,000,000 KRW to 20,000,000 KRW and 40% for amount over 20,000,000 shall be deductible. Also, 10% of deductible amount shall be deducted within 40% of local income tax.

Thirdly, local organization may provide return(Excluding cash and cash equivalent) under 30% of the contribution amount to taxpayer who made hometown contribution. Fourthly, organization that receives contribution shall be subjected to all local organization.

Lastly, for the contributed amount and object, donator shall choose the purpose of contribution(Field or business) and rule shall be amended forcing local organization to disclose contribution detail.

〈Key words〉 Tax Levied for Support of Hometown, Local Organization, Tax Deduction, Contribu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2015.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Deagu University, greatsan@daegu.ac.kr